전기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안내

전기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통령령 : 산업자원부 제2007-54호
- 입법예고기간 : 2007. 2. 21~ 2007. 3. 31
- 담당부처 : 산업자원부 에너지안전팀(02-2110-5445)
- 전문참고 : 산업자원부(www. mocie.go.kr)

●●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54호

전기사업법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이유

일반용전기설비(주거용)의 소유자 등이 전기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응급조치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전기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전기사고 조사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고조사를 활성화 하며, 기술기준의 조사 · 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대한전기협회에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 · 보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 · 공급계획에 대한 승인기준을 신설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정함

(2)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조사 · 연구 및 개정검토에 관한 사업'을 추가함

(3) 일반용전기설비(주거용에 한함)의 소유자 등이 전기사용상의 불편 해소나 안전확보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안전공사가 신속히 응급조치할 수 있는 그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4) 전기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전기사고 조사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고조사를 활성화 함

(5) 전기설비기술기준은 기술적 전문성과 조사 · 연구 및 제 · 개정업무의 기술적 특성과 연속성이 요구되므로 전문기관을통한 지속적관리가 필요해 대한전기협회에 위탁함

(6)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요건 중 공용장비 구비수량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완화함.

(7)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시 자료의 제출명령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 의무위반자에 대한 법령의 실효성을 확보함

전기사업법시행령 신 · 구조문대비표 (주요내용 발췌)

현 행

[별표 1의2]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요건(제45조 제1항관련)

구 분	구 비 요 건	
1. 자본금	2억원 이상	
2. 기술인력	(생략)	
3. 장비	공용장비	ㅇ 계전기시험기 : 2대 ㅇ 절연내력시험기(직류60kV 또는 교류30kV) : 1대 ㅇ 절연유내압시험기 : 2대 ㅇ 절연유산가측정기 : 2대 ㅇ 절연저항측정기(1,000V, 2,000MΩ) : 3대 ㅇ 회로시험기 : 3대 ㅇ 특고압 COS 조작봉 : 3대 ㅇ 고압절연장갑 : 5족 ㅇ 절연장화 : 5족 ㅇ 절연안전모 : 5개
	개인장비	(생략)

개 정 안

[별표 1의2]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요건(제45조 제1항관련)

구 분	구 비 요 건	
1. 자본금	(현행과 같음)	
2. 기술인력	(현행과 같음)	
3. 장비	공용장비	ㅇ (현행과 같음) ㅇ (현행과 같음) ㅇ 절연유내압시험기 : 1대 ㅇ 절연유산가측정기 : 1대 ㅇ 절연저항측정기(1,000V, 2,000MΩ) : 2대 ㅇ 회로시험기 : 2대 ㅇ 특고압 COS 조작봉 : 2대 ㅇ 고압절연장갑 : 3족 ㅇ 절연장화 : 3족 ㅇ 절연안전모 : 3개
	개인장비	(현행과 같음)

전기사업법시행령 신 · 구조문대비표 (주요내용 발췌)

현 행

비 고
1. ~ 2 (생략)
〈신 설〉

〈신 설〉

[별표 2]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요건(제45조제2항관련)

구 분		특별시 및 광역시	도
1. (생략)		(생략)	(생략)
2. 기술인력	ㅇ 기사(명) – 전기기사 – 전기산업기사	7 2 5	5 2 3
	ㅇ 안전관리보조원	1	1
3. (생략)		(생략)	(생략)

비 고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별표 3]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제45조제3항관련)

장 비	수량
(생략)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별표 4]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금액(제63조제3항관련)

위반행위	해당법 조문	과태료 금액
1.~ 3. (생략)	(생략)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4.~ 12. (생략)	(생략)	(생략)

개 정 안

비 고
1. ~ 2. (현행과 같음)
3. 2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4.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교정검사대상인 장비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에 의하여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별표 2]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요건(제45조제2항관련)

구 분		특별시 및 광역시	도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ㅇ전기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2명 이상	2명 이상
	ㅇ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자	5명 이상	3명 이상
	ㅇ안전관리보조원은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이거나 전기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1명 이상	1명 이상
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비 고
1.〈삭 제〉
2. 〈삭 제〉
3. (현행과 같음)
4. 기술인력은 소속 대행사업체에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를 제외한다.
5. 2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6.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교정검사대상인 장비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에 의하여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별표 3]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제45조제3항관련)

장 비	수량
(생략)	(생략)

비 고
1. 2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교정검사대상인 장비에 대하여는 해당법률에 의하여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별표 4]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금액(제63조제3항관련)

위반행위	해당법 조문	과태료 금액
1.~ 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의2. 법 제73조의8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거부하거나 장부 ·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의 조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108조제1항제1의4	200만원
4.~ 1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안내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ㅁ 부 령 : 산업자원부 제2007-55호
- ㅁ 입법예고기간 : 2007. 2. 21~ 2007. 3. 31
- ㅁ 담당부처 : 산업자원부 에너지안전팀(02-2110-5445)
- ㅁ 전문참고 : 산업자원부(www. mocie.go.kr)

●●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55호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이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기존 발전소에 3천킬로와트 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신규설치시 종전의 허가에서 신고로 그 규제를 완화하고 또한 신재생에너지 중 전기안전관리자의 상주제도에서 대행제도로 완화된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설비에 대한 그 대행규모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며 전기안전관리자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종전의 등록취소 외에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처분도 가능토록 완화됨에 따라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고자 함

⊙ 주요 내용

(1) 기존 발전소에 3천킬로와트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신규 설치시 종전의 사업허가에서 신고제도로 간소화함

(2) 전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 · 합병의인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전기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의세부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4) 일반용전기설비 정기점검 시기를 조정

(5) 태양광발전설비 및 연료전지 발전설비에 대한 그 대행규모 및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6)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변경신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7) 전기안전관리자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기준을 정함

(8) 태양광 및 연료전지발전설비의 사용전검사 받는 시기를 명문화 함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 ① (생 략) ② (생 략) 1. (생 략) 2. (생 략) 가. ~ 다. (생 략) 라. 「소방기본법」에 의한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 3. (생 략) 가. (생 략) 나. 「영화진흥법」에 의한 영화상영관 다. ~ 사.(생 략) 아.「소방기본법」에 의한 집회장 ③ (생 략)	**제3조**(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 3.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화상영관 다. ~ 사.(현행과 같음) 아.「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에 의한 집회장 ③ (현행과 같음)
제5조(변경허가사항 등) ①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2. (이하 생략) 3. 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발전용 전기설비의 설치	**제5조**(변경허가사항 등) ①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2. (이하 생략) 3. 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발전용 전기설비의 설치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장소(동일한 읍 · 면 · 동내에서 설치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설비용량(변경정도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설비용량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및 원동력의 종류	장소(동일한 읍 · 면 · 동내에서 설치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설비용량(변경정도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설비용량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와 설비용량 30만킬로와트이상의 발전설비에「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설비용량 3천킬로와트이하의 발전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원동력의 종류(설비용량 30만킬로와트이상의 발전설비에「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설비용량 3천킬로와트이하의 발전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9조의 2 〈신설〉	**제9조의 2**(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 · 합병의 인가기준)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발전시설용량이 3천킬로와트이하의 발전사업의 경우에 한한다)는 제7조를 준용하여 인가 신청된 내용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영 제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부적인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 중 전력산업발전의 기본방향 등에 부합할 것 2.전기사업 일부의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 · 합병으로 사업구역 또는 특정 공급구역이 부당하게 축소되거나 공급조건이 저하되는 등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을 것
제19조의2 〈신설〉	**제19조의2**(사실조사) ①법 제22조제2항의 자료 제출 명령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면으로 한다. 1.사건명 및 제출일시 2.보고 또는 제출 자료의 내용 ②법 제22조제3항의 조사계획의 사전통지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면으로 한다. 1.조사일시 및 장소 2.조사인원 및 조사대상 3.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③법 제22조제3항의 사전통지가 있은 후 피조사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사실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1.합병 · 인수, 화의 또는 법정관리신청 또는 파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2.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 증거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3.화재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사업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제19조의2(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준용) (생략)	**제19조의3** (현행 제19조의2) (생략)
제31조(사용전검사의 대상 · 기준 및 절차등) ① ~ ④ (생 략) ⑤ (생 략) 1. (생 략) 1의2. 설계도면 및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배치확인서 1의3. ~ 2.(생 략)	**제31조**(사용전검사의 대상 · 기준 및 절차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1의2. 설계도면 및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배치확인서 1의3. ~ 2.(현행과 같음)
제35조의2(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 ①안전공사는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을 사용전점검 또	**제35조의2**(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 ① ----------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는 정기점검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 다만, 사용전점검 후 최초의 정기점검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당해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와 동일한 지역에 설치된 다른 전기설비의 정기점검시기에 일괄하여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점검은 당해 전기설비에 대한 최초의 정기점검으로 본다.
〈단서 신설〉	
1. 다음 각목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1년이 되는 날 가. ~ 다.(생 략) 라.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마.(생 략) 바.「초 · 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사. ~ 차.(생략) 카. 〈신 설〉 타. 〈신 설〉 파. 〈신 설〉	1. 다음 각목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1년이 되는 날 가. ~ 다.(현행과 같음) 라. 「청소년활동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마. (현행과 같음) 바.「유아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사. ~ 차.(현행과 같음) 카.「모자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산후조리원업 시설 타.「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시설 파. 고시원업, 전화방업 · 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시설
2. 다음 각목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2년이 되는 날 가. (생 략) 나.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시설	2. 다음 각목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2년이 되는 날 가. (현행과 같음) 나.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1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 법 제7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공사, 법 제7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이하 "대행사업자"라 한다) 및 법 제7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이하 "개인대행자"라 한다)가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용전기설비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1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 법 제7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공사, 법 제7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이하 "대행사업자"라 한다) 및 법 제7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이하 "개인대행자"라 한다)가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용전기설비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이하 각각 "태양광발전설비", '연료전지발전설비"라 한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자가용전기설비와 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동일한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자가용전기설비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로서 전체용량의 합계가 1천50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	1.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가. 자가용전기설비: 용량 1,000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 및 1,000킬로와트 이하의 태양광발전설비, 250킬로와트 이하의 연료전지발전설비로서 전체용량의 합계가 2천50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 나.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1,000킬로와트 이하의 태양광발전설비와 250킬로와트 이하의 연료전지발전설비로서 전체용량의 합계가 1,000킬로와트 이하인 전기설비
2. 개인대행자 :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와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로서 전체용량의 합계가 80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	2. 개인대행자 가. 자가용전기설비: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와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 및 용량 250킬로와트 이하의 태양광발전설비, 용량 50킬로와트 이하의 연료전지발전설비로서 전체용량의 합계가 1,05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 나.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용량 250킬로와트 이하의 태양광발전설비와 용량 50킬로와트 이하의 연료전지발전설비로서 전체용량의 합계가 250킬로와트 이하인 전기설비
제4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①법 제7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	**제4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①법 제73조의2 제1항 · 제3항의 규정에 ----------
1. ~ 2.(생 략)	1. ~ 2.(현행과 같음)
② 법 제73조의2 제1항의 규정 ----------	②법 제73조의2 제1항 · 제3항의 규정----------
1. ~ 2.(생 략)	1. ~ 2.(현행과 같음)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③ 법 제 73조의2 제1항 후단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전기설비: 설비의 용량, 수전전압 2. 소유자 · 점유자: 상호, 대표자, 소재지
③(생략) ④ 전력기술인단체는 제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신고를 한 자가 선임신고필증의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8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현행 제3항과 같음) ⑤----------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신 설〉	**제46조의4**(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 등)①법 제73조의6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15의2와 같다. ②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9](생 략)	

[별지 제35호서식]

전기안전관리자선임(해임)신고서[상주용]				처리기간 3일
업체코드		법인(주민)등록번호		
전기설비 (생략)	(생략)			
전기설비 발전설비	상용	kW	전압	V
	비상용	kW	전압	V
	〈신설〉			
전기설비 (생략)	(생략)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자	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또는 소재지			
전기안전관리자	(생략)			
	(생략)			
〈신설〉				
전기사업법 제73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위와 같이 선임(해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력기술인단체장 귀하				
선임신고첨부서류	(생 략)			
해임신고첨부서류	(생 략)			
기재요령	1. · 2. (생 략) <신 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5호서식]

전기안전관리자선임(해임)신고서[상주용]				처리기간 3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전기설비 (생략)	(현행과 같음)			
전기설비 발전설비	상용		kW 전압 V	
	비상용		kW 전압 V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kW 전압 V	
		연료전지	kW 전압 V	
		기타	kW 전압 V	
전기설비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동일)	(현행과 같음)		좌동	
			상동	
	상동			
	상동			
(현행과 동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전기설비				
소유자 · 점유자				
변경일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기재요령	1. · 2. (현행과 같음) 3. 변경사항에는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고, 변경된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ACT INFORMATION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별지 제36호서식]

전기안전관리자선임(해임)신고서[비상주용] [ㅁ대행사업자 ㅁ개인대행자 ㅁ안전공사]					처리기간 3일
업체코드		법인(주민)등록번호			
전기설비	(생략)	(생략)			
	발전설비	비상용	kW	전압	V
	(생략)	(생략)			
안전관리대행 업무를 하는자		(생략)			
전기안전 관리자		(생략)			
〈신설〉					
전기사업법 제73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위와 같이 선임(해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력기술인단체장 귀하					
첨부서류 1. (생 략) 2. (생 략)					수수료 없음
〈신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8호서식]

전기안전관리자선임(해임)신고필증 [ㅁ상주 ㅁ위탁사업자(안전관리전문, 시설관리전문) ㅁ대행사업자 ㅁ개인대행자 ㅁ안전공사]						
업체코드 :						
전기설비	회사명 또는 상호					
	대표자 성명					
	전기설비 위치					
	수전설비	용 량	kW	전 압	V	
	발전설비	상 용	kW	전 압	V	
		비 상 용	kW	전 압	V	
	휴지설비	용 량	kW	전 압	V	
		용 도		휴지기간		
	기타사항	계약종별		사용개시일		
안전관리업무를 위탁 받은 자 또는 대행하는 자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전기안전 관리자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좌 동)
전력기술인단체장 인						
수수료 (생 략)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개 정 안

[별지 제36호서식]

전기안전관리자선임(해임)신고서[비상주용] [ㅁ대행사업자 ㅁ개인대행자 ㅁ안전공사]					처리기간 3일
전기설비	(생략)	(현행과 같음)			
	발전설비	비상용	kW		V
		태양광	kW		V
		연료전지	kW		V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동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전기설비					
소유자 · 점유자					
변경일자					
----------제45조제3항----------.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력기술인단체장 귀하					
첨부서류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수수료 없음
기재요령 : 변경사항에는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고, 변경된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8호서식]

전기안전관리자선임(해임)신고필증 [ㅁ상주 ㅁ안전관리 위탁 ㅁ시설물관리 위탁]							
업체코드 :							
안전관리업무를 위탁 받은 자							
----------제45조제5항----------.							
수수료 (생 략)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지 제38호의 2서식]

전기안전관리자선임(해임)신고필증
[□대행사업자 □개인대행자 □안전공사]

업체코드 :

전기설비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또는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전기설비 위치				
	수전설비	용 량	kW	전 압	V
	발전설비	상 용	kW	전 압	V
		비 상 용	kW	전 압	V
	휴지설비	용 량	kW	전 압	V
		용 도		휴지기간	
	기타사항	계약종별		사용개시일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		등록(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전화번호			

전기사업법 제73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신고를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전력기술인단체장 인

	수수료
	전기사업법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통령령 :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7-58호

□ 입법예고기간 : 2007. 2. 20 ~ 2007. 3. 12

□ 담당부처 : 건설교통부(02-2110-8598, 8600)

□ 전문참고 : 건설교통부(www.moct.go.kr)

⊙ 개정이유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하는 도로 설치기준을 단지특성에 맞게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문고의 설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도로폭 개선

(1)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주택단지에서 주차장입구를 주택단지의 출입구 부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상의 교통량이 작아지므로 주택단지의 특성에 맞게 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주택단지안의 도로 폭은 주택단지의 특성에 맞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소방 및 비상차량의 이동에 필요한 폭 6미터 이상의 도로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3) 주택단지의 특성에 맞게 단지 내 도로를 설치할 수 있어 자유로운 주택단지 설계가 가능하고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공동주택단지 내 문고시설 설치기준 개선

(1)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는 「도시관 및 독서진흥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고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문고 설치 기준에서 비치할 도서의 권수만 규정하고 가격에 대한 기준은 없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하는 문고는「도시관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되 별도로 건설교통부장관이 문화관광부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문고의 가격기준에도 적합하도록 함

(3) 문고에 설치하는 자료수와 함께 가격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자와 입주민간의 분쟁의 소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전기사업법(안전관리분야) 유권해석 사례

문의 | 민원봉사실 02-2182-0741~3

01 전기시설(7,500kW, 수전점 1개소)이 있는 공장의 일부(30%)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수전점을 2개소로 변경해야 하는지 및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방법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전기설비의 공사 · 유지 ·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경우처럼 공장의 일부인 약30%를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에 따른 각종 시설물도 포함하여 임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소유자가 전기사용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전기시설을 이용하면 되므로 별도로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따로 수전 받지 않아도 되며 전기안전관리자도 따로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06.22)

02

○ 아파트 4개동이 각각 수전 받아 사용하고 4개동 주변에 도로가 있는 경우로, 아파트 사업자등록 및 관리사무소가 하나로 되어 있는데 전기안전관리자도 4동(2구역)을 통합하여 선임할 수 있는지

○ 안전관리대행업자는 비상주로 여러곳을 혼자 선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동일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가 상주한다면 여러개의 전기설비를 합쳐서 선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전기설비의 공사 ·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법시행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는 선임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사업장"이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그 수전장소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가 설치된 각각의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동일하고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가 담 · 울타리 · 도로 등으로 구획되지 아니한 동일구내를 말합니다.

귀 관리소의 경우 4개동이 하나의 관리소를 통합운영하더라도 각각의 독립된 건물을 신축하여 각각의 수전설비를 갖추게 되는 경우 전기설비가 설치된 사업장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소규모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전기안전관리자 채용에 따른 비용부담 및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덜기 위함이며, 전기안전관리업무의 효율적수행과 전기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설비규모별로 개소와 점검횟수를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10.18)

03 기존 전기실(22.9kV, 10,000kW)에서 구내 다른 건물에 모자거래방식으로 별도 전기실(22.9kV, 2,500kW)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전기안전관리자를 별도로 두어야 하는지 ? !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안전관리자는 1인을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모자거래방식에 의하여 2이상의 점유자가 분할 관리하는 경우 등 특수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모자수전방식에 의하여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 모측에서 자측의 전기설비를 관리한다면 자측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따로 선임해야할 의무는 없으나, 모측의 전기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공급받는 자측의 전기설비 소유자가 모측과 동일하지 아니하고 한전과 공급계약이 따로 체결된 경우에는 자측의 전기설비에 별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04.08)